
제2023-11회

중앙운영위원회

2023. 5. 13.

보 고 안 건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12.

안 건 제 출 자 총학생회장 강동재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22회 인권벨트 회의 참석
 - 일시: 4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원격영상회의
 - 참석자: 주영석 포용성위원회 위원장, 김상욱 인권윤리센터장, 정용희 상담센터장, 김소희 인권윤리센터, 김아름 인권윤리센터, 신예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장
 - 내용: (1) 인권 안내문 (2) 생활 도움 버디 프로그램 -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들이 신청하면 원하는 일시, 장소에 한국인 학생이 동행하여 일회성의 도움을 주고, 한국인 학생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 (3) 중앙운영위원회 통역 (4) 고려대학교 다양성 위원회 사례 등 4건의 사안에 관하여 논의함.
- KAIST 학생 정신건강 관련 회의 참석
 - 일시: 4월 25일(화) 오전 9시 15분
 - 장소: 본관 301호 학생정책처장실
 - 참석자: 이수진 학생정책처장 겸 학생생활처장, 정유경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동현 대학원 총학생회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장
 - 안건: KAIST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학교 측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신규 초빙하였으며, 해당 교수님을 필두로 시스템적 개선에 힘쓰기로 함.
- 제2차 전동킵보드 안전수칙 관련 회의 참석
 - 일시: 5월 2일(화) 오전 10시
 - 장소: 본관 301호 학생정책처장실
 - 참석자: 이수진 학생처장, 서용석 시설부장, 윤여갑 안전팀장, 문영주 시설팀장, 강용석 학생생활팀장, 방동석 학생지원팀장, 강하연 학생지원팀, 이동현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 회장, 한정현 학부 총학생회 부회장
 - 내용
 1. 추진 경과
 - 가. 태울관 앞 도로 앞 전동킵보드 사고 발생(2023. 4. 14.)으로 인한 교내 개

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방안 긴급회의(2023. 4. 20.)

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영 관련 부서별 추진 계획안 공유 실무 회의
(2023. 5. 2.)

2. 양대 총학생회에서는 안전 수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보다는 사고 사례별 충분한 홍보와 선행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향후 계획

가. (학생지원팀)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 전파, 안전 헬멧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학생정책처장 명의 서신 발송, 학부 총학생회와 안전모 구매 사업 진행

나. (학생생활팀) 학생회, 학생지원팀과 공동으로 안전모 구매사업을 진행, 새내기 학생들에게 안전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안내

다. (안전팀)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캠페인'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고, 교내에서 학생들과 공동으로 단속하는 방안과 유성경찰서와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주요 건물과 시간대의 단속 정보, 단속 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

라. (학부 총학생회) 안전모에 대한 수요조사, 학교와 공동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수행하고 학생 커뮤니티(ARA, 에브리타임 등)에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을 함께 안내

○ 제2023-4회 학생상별위원회 참석

- 일시: 5월 9일(화) 오전 10시

- 장소: 본관 1층 제1회의실

- 안건: 전기 회의록 보고 등 보고안건 2건과 학생징계심의, 에쓰-오일 우수학위논문상 수상후보자 추천 등 심의안건 3건.

○ 건강관리실 활성화 방안 관련 회의 참석

- 일시: 5월 9일(화) 오후 12시 10분

- 장소: 태울관 2104호 건강관리실

- 참석: 방동석 학생지원팀장, 건강관리실 담당자 3인, 이동현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박광석 대학원 총학생회 대회협력부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 회장, 추도현 학부 총학생회 복지팀장

- 내용: 코로나19 이후 건강 관리실 이용자 확대 방안에 관하여 논의함. '건강관리실에서 역할 및 이용 시간, 이용 FAQ 등 관련 정보를 전체 학생에게 안내할 것'을 논의함.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복측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건강관리실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카이마루, 기숙사 등에 세로형 배너를 비치할 것을 요청함.

○ KAIST 협동조합 컨설팅 및 회의 참석

- 일시: 5월 11일(목) 오후 2시

- 장소: 본관 4층 제2회의실

- 참석자: 신병하 글로벌리더십센터장, 이수진 학생정책처장 겸 학생생활처장, 문영주 시설팀장, 김건철 고객경영팀장, 이진호 고객경영팀, 최문영 고객경영팀, 임철수 카이스트 협동조합 이사장, 장현수 대학원 총학생회 미래전략실장, 김재호 학생복지위원회 코인노래방 TF장, 김우혁 학생복지위원회 위원,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 회장, 한정현 학부 총학생회 부회장
 - KAIST 협동조합 설립 TF 회의의 후속 회의로 진행함.
 - 내용: KAIST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 후속 회의를 통하여, 30명으로 구성된 발기인회를 발족하고 발기인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관 검토 및 수정 작업과 조합원 300명 및 출자금 3,000만원 모집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준비를 진행함.
 - 제2023-1회 학부 교과과정심의회 참석
 - 일시: 4월 25일(화) 오후 12시
 - 장소: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3층 1334호 세미나실
 - 내용: 2023년 여름 및 가을학기 개설과목 논의 등의 안건을 다룸.
 - 제2023-3회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참석
 - 일시: 5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본관 4층 제2회의실
 - 안건: 제2023-2회 회의록 보고, 교과목 개설학기 변경 보고 등 보고안건 2건, 양자 대학원 이수요건 및 교과목 신설(안) 등 심의안건 16건.
 - 제2023-4회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참석
 - 일시: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본관 1층 제1회의실
 - 안건: 제2023-3회 회의록 보고 등 보고안건 1건, 반도체공학대학원 설치(안) 등 심의안건 4건, 단과대학 산하 프로그램(급) 학사조직 운영기준(안) 등 논의안건 1건.
 - 의결문안
 -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보고안건 제3호 바이오및뇌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10.

안 건 제 출 자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회장단 등 선출직의 선출·탄핵·사퇴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자: 바이오및뇌공학과 학부 학생회 정회원 중 재학 학기가 4학기 이내인 사람 및 준회원 중 바이오및뇌공학과 자치규칙 제5조제7항의 의무를 지킨 사람
- 피선거권자: 바이오및뇌공학과 학부 학생회 정회원 중 재학 학기가 4학기 이내인 사람 및 준회원 중 바이오및뇌공학과 자치규칙 제5조제7항의 의무를 지킨 사람
- 관련 규정: 「학생회칙」 제105조, 「바이오및뇌공학과 자치규칙」 제4조, 제5조, 제50조 및 제51조

○ 투표 방식

- 선거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카카오톡 투표를 익명으로 진행함. 사전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 유효투표율

- 선거권자의 1/3 이상 (「바이오및뇌공학과 자치규칙」 제54조)

○ 선거 결과

- 실 투표율: 57.14% (선거권자 21인 중 총 12인 투표) 과대표 후보: 배지혁. 찬성: 12(57.14%)/반대: 0(0.00%)/기권: 0(0.00%). 부과대표 후보: 송채빈. 찬성: 12(57.14%)/반대: 0(0.00%)/기권: 0(0.00%).
- 개표 결과 공고로부터 24시간동안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당선이 확정됨.

○ 바이오및뇌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 왕예준 (20210388, 바이오및뇌공학과, 선거관리위원장), 김민주 (20200749, 바이오및뇌공학과, 선거관리위원)

○ 선거 일정

- 선거시행공고일: 2023. 3. 20.
- 후보등록기간: 2023. 3. 20.~2023. 3. 27.
- 후보공고일: 2023. 3. 27.
- 선거운동기간: 2023. 3. 27.~2023. 3. 28.
- 투표일: 2023. 3. 28.
- 개표일: 2023. 3. 29.
- 이의제기 기간: 개표 결과 공고로부터 24시간.

○ 합동유세, 후보자 토론회 등 운영위원회의 활동

- 해당사항 없음
- 바이오및뇌공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록
 - 해당사항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
 - 사용 예산 없음
- 그 밖의 기록할 가치가 있는 선거 관련 사안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바이오및뇌공학과 자치규칙

제54조(선거방법)

각 학년별 대표, 중앙선관위로 위탁하지 않은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자체적으로 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관위 등록시 공약문을 함께 첨부, 공고한다.
3. 선거권자 1/3이상의 투표시 유효 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다면, 재선거를 진행한다.
4. 유효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오거나, 가부동수, 혹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을시,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진행한다.
5. 단일후보일 경우,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6. 회계담당자는 과학생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 의결문안
 - 바이오및뇌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보고안건 제4호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선출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10.
안 건 제 출 자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회장단 등 선출직의 선출·탄핵·사퇴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자: 총학생회 정회원이며 재학학년이 4학년 이하이며 신소재공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자
 - 피선거권자: 선거권자와 동일
 - 관련 규정: 「학생회칙」 제105조, 「신소재공학과 자치규칙」 제58조제2항.
- 투표 방식
 - 카카오톡 채팅방의 투표 기능을 이용한 온라인 익명 투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음.
- 유효투표율
 - 「신소재공학과 자치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하여 50%로 함.
- 선거 결과
 - 실 투표율: 65.00% (선거권자 20인 중 총 13인 투표) 과대표 후보: 엄석주. 찬성: 13(100.00%)/반대: 0(0.00%)/기권: 0(0.00%).
 - 개표 결과 공고로부터 24시간동안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당선이 확정됨.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 이창섭 (21, 신소재공학과, 운영위원장)
- 선거 일정
 - 선거시행공고일: 2023. 2. 21.
 - 후보등록기간: 2023. 2. 21.~2023. 3. 3.
 - 후보공고일: 2023. 3. 4.
 - 선거운동기간: 2023. 3. 4.~2023. 3. 6.
 - 투표일: 2023. 3. 7.
 - 개표일: 2023. 3. 8.
 - 이의제기 기간: 개표 결과 공고로부터 24시간.
- 합동유세, 후보자 토론회 등 운영위원회의 활동
 - 없음
- 신소재공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록
 - 없음

- 운영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
 - 없음
- 그 밖의 기록할 가치가 있는 선거 관련 사안
 - 없음
- 참고사항
 - 「신소재공학과 자치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과대표도 선출해야 하지만, 후보 등록이 없어 제64조제7항 및 제66조에 의해 현재까지도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과대표와 부과대표를 동시에 선출 보고하기 위해 부과대표가 선출되기를 기다렸으나 개강 후 2달이 지난 현재까지 후보가 없어 과대표만 선출 보고함.
 - 관련 규정

■ 신소재공학과 자치규칙

제64조(선거)

- ① 매년 봄 학기에 2학년 과대표 부과대표를 선출한다.
- ② 6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3학년 과대표 인준이 불가능할시 봄 학기에 3학년 과대표를 선출한다.
- ③ 선거는 제58조에 명시된 선거권자의 2/3 이상이 재석일 경우 시행한다.
- ④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선출은 독립적이며, 과대표의 선출 이후, 부과대표의 선출이 이루어진다.
- ⑤ 선출되지 못한 과대표 후보자는 부과대표 후보자로 지원할 수 있다.
- ⑥ 당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후보자일 경우, 찬반투표를 하여 찬성이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넘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를 시행한다.
 - (1) 최고 득표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 (2) 최고 득표자가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4.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선거를 시행한다.
 - (1)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 (2) 단일 후보일 때,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 (3) “기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을 경우
 - (4)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난 경우
- ⑦ 과대표 및 부과대표의 부재가 발생할 경우 1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과대표 및 부과대표 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결문안
 - 신소재공학과 과대표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보고안건 제5호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선출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5. 9.
안 건 제 출 자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회장단 등 선출직의 선출·탄핵·사퇴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동아리연합회에서 다음과 같이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을 선출함.
 - 비례 대의원3: 변재민(21, 원자력및양자공학과)
 - 비례 대의원4: 조현준(23, 새내기과정학부)
 - 선출 과정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및 집행부원을 대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을 공개 모집함.
 - 동아리연합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함.
- 참고사항
 - 비례 대의원 선출 규정: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 동아리연합회칙

제32조(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3조(권한)

확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2.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3.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4.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5. 분과구 및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6.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의결문안
 -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 대의원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대의원 선출을 의결한 회의체 명칭	동아리연합회 확대운영위원회
해당 회기의 명칭	2023년 제4차 확대운영위원회(4월, 정기회)
해당 회기의 일시	2023. 4. 27.
안건제목	인준안건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인준
표결결과	총원: 26명/재적: 21명 재석: 19명/찬성: 19명/반대: 0명/기권: 0명
해당 의결사항의 의사	변재민(21,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조현준(23, 새내기과정학부)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으로 인준함.

심 의 안 건

심의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11.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6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구인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설치함.
- (권한)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음.
- (구성)
 - 일반위원 8명 및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함.
 - 일반위원은 뇌인지과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사람으로 함.
 - 자문위원은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사람으로 함.
- (위원 명단)

구분	이름	학번	비고
일반위원	이재경	20220519	뇌인지과학과 과대표
일반위원	박서은	20220255	뇌인지과학과 부과대표
일반위원	김용문	20220140	뇌인지과학과 총무
일반위원	오대혁	20220415	
일반위원	명태식	20220229	
일반위원	강서현	20220010	
일반위원	김정빈	20220158	
일반위원	허제현	20220741	
자문위원	한정현	20200692	부총학생회장
자문위원	박병찬	20210227	전산학부 학생회장
자문위원	이창섭	20210522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자문위원	김시은	20210120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 (운영 계획)

- 매주 일요일 오후6시 대면으로 회의를 원칙으로 함. 대면 참여가 어려운 위원은 비대면(줌, 카카오톡)으로 참여함.
- 주요 업무는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 및 제출임. 작성 예정인 서류로는 안건지(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자치규칙),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예산안(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등이 있음.
- 기획부(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 및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예산안 작성 담당), 운영부(안건지 및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작성 담당)으로 부서를 나누어 6월 20일까지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준비위원회 활동 계획은 다음 표와 같음.

날짜	내용
2023. 5.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준비위원회 설치
2023. 5.~2023. 6.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 및 중앙운영위원회로 제출
2023. 6.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검토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심의
2023. 7.	-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출 및 해체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안: 붙임

참고사항

○ 관련 규정

제62조(위원회)

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3.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4.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의결문안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안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2023. 4. 17.)

1

개요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설치함.
- 준비위원회는 그 활동을 통해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안 등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하고 학생회 조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뇌인지과학과 학생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성

구분	이름	학번	비고
일반위원	이재경	20220519	뇌인지과학과 과대표
일반위원	박서은	20220255	뇌인지과학과 부과대표
일반위원	김용문	20220140	뇌인지과학과 총무
일반위원	오대혁	20220415	
일반위원	명태식	20220229	
일반위원	강서현	20220010	
일반위원	김정빈	20220158	
일반위원	허제현	20220741	
자문위원	한정현	20200692	부총학생회장
자문위원	박병찬	20210227	전산학부 학생회장
자문위원	이창섭	20210522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자문위원	김시은	20210120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 주요 업무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 및 제출 및 학생회 조직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안건지(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자치규칙),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예산안(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등의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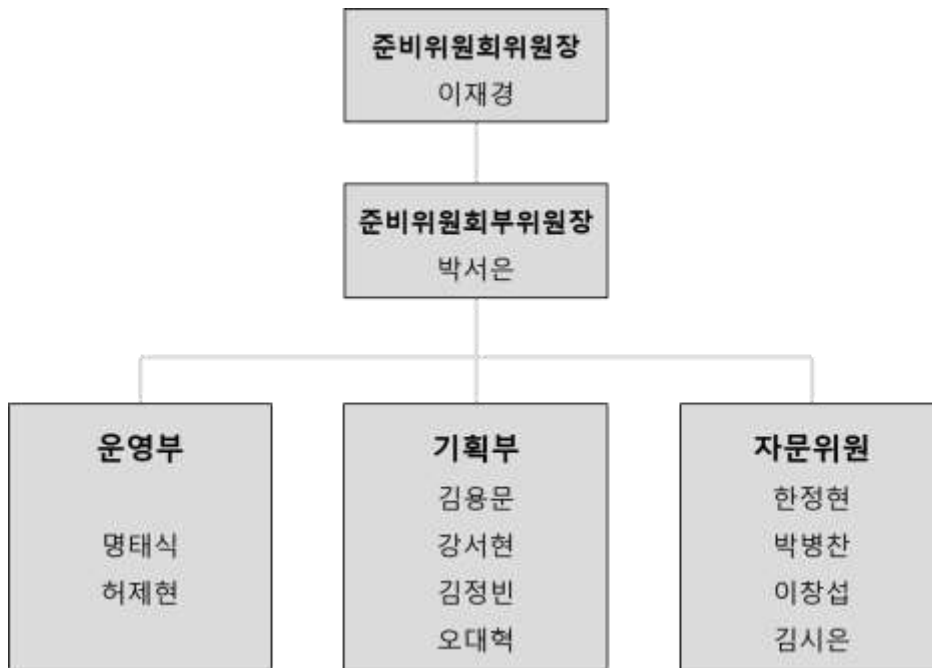
□ 사업 계획

- 부서
 - 운영부(안건지 및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
 - 기획부(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 및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예산안)
- 운영 계획

날짜	내용
1차(~2023. 5. 6.)	- 운영부 : 안건지 완성 - 기획부 : 사업계획서 아웃라인 작성
1차 회의(2023. 5. 7.)	- 안건지 검토 및 사업 선정
2차(~2023. 5. 13.)	- 운영부 : 학생회칙 1/2 작성 - 기획부 : 사업계획서 완성
2차 회의(2023. 5. 14.)	- 학생회칙 검토 및 의결, 사업계획서 검토
3차(~2023. 5. 20.)	- 운영부 : 학생회칙 완성 - 기획부 : 예산안 1/2 완성
3차 회의(2023. 5. 21.)	- 학생회칙 검토 및 의결, 예산안 검토 및 수정 사항
4차(~2023. 5. 27.)	- 운영부

	: 회칙 최종 수정 - 기획부 : 예산안 완성
4차 회의(2023. 5. 28.)	- 학생회칙 최종 의결, 예산안 검토 및 수정사항
5차(~2023. 6. 20.)	- 운영부 : 최종 회칙 확정 - 기획부 : 예산안 수정 및 완성

□ 조직도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타임라인

날짜	내용
2023. 4. 5.~2023. 4. 16.	- 뇌인지과학과 내 준비위원회 참여 인원(일반위원) 파악 -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내 준비위 참여 인원(자문위원) 인원 파악
2023. 4. 18.	- 안건 서식 제공(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

	위원회 위원 인준안)
~2023. 4. 28.	- 안건 제출(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안,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2023. 4. 29.	- 소관 소위원회에 안건 회부
2023. 5.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안을 심의함
~2023. 6. 21.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작 및 제출 : 안건지(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칙(자치규칙),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사업계획서(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예산안(2023년도 3분기 및 하반기) 등
2023. 6. 22.	- 소관 소위원회에 안건 회부
2023. 6. 26.	- 중앙운영위원회 6월 정기회의에서 준비위원회 운영 보고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검토
2023. 6.	- 6월 말 개회 예정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인준안 의결
2023. 7.	-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장단 선출 -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
2023. 7.~2023. 8.	-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출(타 학과·학부 학생회와 동일하게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로서 업무 수행)

3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칙」 제6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뇌인지과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은 일반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일반위원은 뇌인지과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사람으로 한다.
- ③ 자문위원은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중앙운영위원회 인준 이후부터 위원회 해산까지로 한다.

-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단)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재적위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일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임사항) 위원회는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 준 안 건

인준안건 제1호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11.

안 건 제 출 자 뇌인지과학과 과대표 이재경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62조에 따라 설치한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인준하기 위함.

주요내용

- (위원 모집 과정) 총학생회-뇌인지과학과 회의(2023. 4. 5.)에서 중앙운영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뇌인지과학과 학생들 중에서 일반위원을 모집하기로 논의함.
- (위원 구성)
 - 일반위원 8명 및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함.
 - 일반위원은 뇌인지과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은 사람으로 함.
 - 자문위원은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은 사람으로 함.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 다음의 인원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구분	이름	학번	비고
일반위원	이재경	20220519	뇌인지과학과 과대표
일반위원	박서은	20220255	뇌인지과학과 부과대표
일반위원	김용문	20220140	뇌인지과학과 총무
일반위원	오대혁	20220415	
일반위원	명태식	20220229	
일반위원	강서현	20220010	
일반위원	김정빈	20220158	
일반위원	허제현	20220741	
자문위원	한정현	20200692	부총학생회장
자문위원	박병찬	20210227	전산학부 학생회장
자문위원	이창섭	20210522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자문위원	김시은	20210120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의결문안

-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논 의 안 건

논의안건 제1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5. 12.

안 건 제 출 자 총학생회장 강동재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하기 위함.
-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과정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안
 - (발급 방법) Google Forms(bit.ly/ua_certificate)를 사용하여 활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함.
 - (발급 범위)
 1. 본회 산하기구의 공식 직위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장·국장·팀장 등 직책에 준하는 비공식 직위에 대해서는 부장, 국장, 팀장 임명 회의록 등 활동확인서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필요로 함.
 3. 정책국장, 디자인부장 등 직책에 대해서는 활동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각각 국장, 부장으로 활동인증서 발급)
 4. TF장 등 기구 내 한시적 직책에 대해서는 활동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 (발급 절차)
 1. 활동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구에 활동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 제출
 2. 기구장 명의 활동확인서 발급 및 수령
 3.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지한 Google Forms에 활동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4.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학생회 명의 활동인증서 발급
 5. 활동인증서 수령
- 현행 제도와 비교

	현 행	개편안
발급 방법	중앙집행위원회로 직접 문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지한 Google Forms로 인적 사항 및 필요한 서류 제출
발급 범위	총학생회 산하 활동 (직책 및 활동)	총학생회 산하기구 직위 (직위)
발급 절차	중앙집행위원회에 발급에 필요한 정보 제출(이름, 학번, 소속학과, 기간, 소속, 직책, 활동) → 활동인증서 수령	활동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구에 발급에 필요한 정보 제출 → 기구장 명의 활동확인서 발급 → 중앙집행위원회에 활동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총학생회 명의 활동인증서 수령
--	---------------------------------

○ 제도 개편 타임라인

일시	활동
2023. 1.~2023. 5.	- 활동인증서 제도 개편안 연구 1. 현행 방식의 문제점 조사 (행정상의 어려움, 신뢰도의 문제, 검증의 어려움) 2. 타 대학 총학생회 사례 조사(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UNIST) - 현행 제도 관련 학우 민원(2023. 4.)
2023. 5. 15.	- 활동인증서 제도 개편 논의
2023. 5. 16.~2023. 5. 18.	-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준비: 필요한 서류 및 매뉴얼을 본회 산하기구 대상 배포
2023. 5. 19.	-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및 홍보: 개편안에 대하여 총학생회 홈페이지, 총학생회 SNS, 에브리타임 총학생회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함
2023. 5. 22.	-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보고 (중앙운영위원회 5월 정기회의)

○ 기대효과

- 투명하고 효율적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정착
- 명확한 활동인증서 발급을 통한 학생자치활동의 책임감 고취

□ 논의사항

- (활동확인서 발급 방법) 활동인증서 발급을 위한 활동확인서를 본회 산하기구에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각 기구의 협조가 필요함. 활동확인서 발급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요청함.

○ (중앙집행위원회 제안 방안)

- 1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작한 기구별 Google Forms를 사용하여 활동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음. (예시: bit.ly/ex_certificate)
- 2안: 각 산하기구의 개별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활동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음.

□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안: 붙임

□ 참고사항

○ 용어 정의

직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진 체계. 예시: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
----	---

	장, 사장 (총학생회 예시: 국원, 부국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등)
직급	직무의 책임정도가 비슷한 직위를 모아 나눈 것. 예시: 과장 3년차, 공무원 9급 3호봉
직책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됨. 예시: 파트장, 팀장, 실장, 본부장, CFO, CEO